

#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0년 8월 24일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0년 8월 24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64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(2010년 9월 6일) 상정 원안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)

### □ 제안이유

- 「학교급식법」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친환경 등 우수 식재료 무상급식 지원사업과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내용

- 가.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제4호 신설).

나. 친환경 등 우수 식재료의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 신설).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개정안이 경기도 표준조례안과 일치하는 것인가?	○ 표준조례안에 맞게 수정한 사항임.
○ 조례나 예산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와 교육청과 업무협약에 만전을 기해 무상급식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임.	○ 잘 알겠음
○ 조례상 친환경급식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?	○ 앞으로 심도있는 토론과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○ 친환경 급식을 2012년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시행착오를 없애야 할 것임.	○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음.
○ 다양한 의견과 사례분석을 통해 무상급식이나 친환경 급식에 대한 정의나 실천계획들을 조례에 충분히 담아가장 모범적인 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권고함.	○ 앞으로 업무를 시행해 나가면서 좋은 모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음.
○ 지난 7월 업무보고시 무상급식을 2012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는데 갑자기 조례와 예산을 의회에 상정한 의도가 무엇인가?	○ 도 교육청에서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5,6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협조요청해 온 사안이며,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<p>○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들의 교육환경이 아직도 많이 열악한 것이 사실임. 이러한 여건에서 무상급식 재원 부담율도 아직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례와 예산이 의회에 제출된 것은 다소 성급하다고 판단되므로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?</p> <p>○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가 정비되지 않은 채 예산이 추경에 편성된 것은 문제가 있음. 원칙에 어긋나는 행정행위가 아닌가?</p> <p>○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시행과정에 있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임. 모든 행정은 원칙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임.</p>	<p>경기도 전체가 시행한다면 우리시도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어 계획을 수정한 것임.</p> <p>○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해 나갈 계획이며,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세밀히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겠음.</p> <p>○ 무상급식은 학교급식법을 근간으로 하는 부분이며, 당초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당시 표준안에 담겨진 내용들이 상당부분 수정되어 이번에 관련 조례를 제대로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임.</p> <p>○ 무상급식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추세이기 때문에 충실히 준비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음.</p>

#### 4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 : 없음

나. 찬성토론 : 없음

5. 심사결과 : 『원안의결』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#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학교급식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에”를 “학교급식에”로 하고, “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에 필요한”을 “위한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법 제4조에 따른 대상 학교에 대하여”를 “「학교급식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4조에 따른 대상 학교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과 「영유아 보육법」에 따른 보육시설에서”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식품비에”를 “식품비 및 급식에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경비 중 일부를 교육경비의 범위에서”를 “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학교의 장은”을 “자는”으로 하고, “개선하는데”를 “개선하는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학교의 장은”을 “자는”으로 한다.

제9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4.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

제10조·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1조,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,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친환경 등 우수 식재료의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필요 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 또는

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